

##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행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 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 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